

# 접수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

## ▶ 교육이수 및 활동

- 활동지원사 교육(이론교육 및 실기교육)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- 현장실습은 교육(이론교육 및 실기교육)을 마친 후,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.
-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합니다.
- 현장실습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 합니다.

## ▶ 교육시 준비사항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), 필기도구 전문 과정 - 자격증 사본

## ▶ 교육장소

-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(시흥비즈니스센터 603호)  
주소: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, 전화: 031) 8041-0822~6

## ▶ 교통편

### ※ 학교 셔틀

정왕역 1번 출구 대학셔틀 승강장 수시(5분소요, 무료)

- 학기 중과 방학 중 운행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※ 일반 버스

- 1, 22, 23, 123, 125 - 이마트 하차 (도보 약10분)
- 20-1, 21, 28, 29 - 산업기술대학교 하차 (도보 약1분)
- 30번 경기과기대학하차 (도보 약1분)

### ※ 광역 버스

- 909, 5601, 510, 350 - 이마트 하차 (도보 약10분)

## ▶ 활동지원사 교육시 주의사항

- 활동지원사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현장실습(10시간)은 교육생이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섭외 하셔야 합니다.
-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.
- 교육기관에서 이론·실기(40H) → 현장실습(10H) → 이수증 발급(교육기관) → 활동지원기관에 취업(채용 계약), 활동지원사로 등록 →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 제공
-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
  -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, 월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·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지원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  - 다른 일자리에 월 120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·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됨으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## • 활동지원사 결격사유

- ✓ 정신질환자(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)
- ✓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✓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- ✓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✓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✓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(도서·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)